

# 제23회 교회개척의 날

"오직 십자가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 개척 목회자 세미나



2026년 5월 13일(수)  
여의도순복음교회



## - 목 차 -

**1강 예수님의 새 언약(지상명령) .....1~13**

(동탄순복음교회 담임목사 손문수 목사)

**2강 소명과 사명 .....14~16**

(예은순복음교회 담임목사 김종호 목사)

**3강 개척교회 행정 및 세무실무 .....17~39**

(개척지교회분과위원회 위원장 강덕진 장로)

# 1강 - 예수님의 새 언약(지상명령)

교회가 붙들어야 할 마지막 새 언약  
(기독교인이 되는 유일한 길)

(강사 : 손문수 목사)

예수께서 나아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 28:18-20)

1. 아담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 : 창 2:17
  - 1) 언약배반 창 3:6
2. 이스라엘에게 주신 언약 : 신 26:16-19, 신 31:9-13
  - 1) 솔로몬 왕의 언약 배반 : 왕상 11:1-11
  - 2) 므낫세 왕의 언약 배반 : 왕하 21:3-7
3. 여로보암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 : 왕상 11:30-38
  - 1) 여로보암 왕의 언약 배반 : 왕상 12:25-33
  - 2) 하나님의 진노 : 왕상 14:7-11
  - 3) 엘리야 시대에 가서는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바알이 하나님인지 알지 못했다.  
: 왕상 18:21
4.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반역 : 호 6:7, 신 32:3-6
5. 새 언약(하나님의 법을 성령님께서서 마음과 생각에 기록)  
: 렘 31:31-33, 히 8:7-10, 히 7:18, 히 10:9-16, 고후 3:3
6.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새 언약(지상명령)  
: 마 28:18-20 참고 히 9:15, 히 12:24

기독교의 역사는 하나님의 '언약' 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아담과 맺으신 최초의 뜻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불순종은 늘 언약을 깨뜨렸고,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결국 멸망의 길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셔서 마지막 새 언약(지상명령, 마 28:18-20)을 맺으셨습니다.

“예수께서 나아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라고 선언하시고 모든 성도에게 세 가지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 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 ②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 ③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명령에 순종하면 확실하게 “내가 세상 끝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초대교회는 이 언약을 생명처럼 붙들었습니다. 제자들은 성령의 권능을 기다리며 기도했고(행 1장), 성령 세례와 불세례를 받은 후(행 2장) 담대히 세상 속으로 나가 복음을 전했습니다(행 2~3장). 그 결과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으며 새로운 제자들의 수가 심히 더 많아지고 그들을 통하여 성령의 권능이 나타났습니다(행 5장-행6장). 예수님의 새 언약(지상명령)에 순종할 때 교회는 폭발적으로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성경은 언약을 저버릴 때의 비참한 결과도 분명히 보여줍니다. 아담의 타락, 솔로몬 · 므낫세 · 여로보암의 불순종은 이스라엘 전체의 영적 붕괴를 초래했습니다. 이사야는 백성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영적 무감각에 빠졌다고 경고했습니다(사 6:9-10). 형식만 남은 신앙은 결국 우상숭배와 미혹(왕상 18:21)으로 이어졌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새 언약을 실행하지 않을 때 교회는 능력을 잃고(딤후 3:5), 촛대가 옮겨지는 심판을 받고(계 2:5), 거짓에 속아 미혹에 빠지게 됩니다(살후 2:9-12).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을 통해 회복의 길도 열어 놓으셨습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기록하시고(렘 31:31-33, 히 10:9-16), 말씀을 지킬 능력을 부여하십니다(신 30:14). 따라서 예수님의 새 언약(지상명령)은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새 언약의 삶이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참된 기독교인이 되는 길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세우시고, 충성된 제자들이 또 다른 제자를 세워 가는 구조(딤후 2:2)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목회방법입니다.

오늘 교회가 회복해야 할 것은 거창한 프로그램이나 조직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새 언약(마 28:18-20)의 본질적 회복입니다. 이것이 살아날 때 성령의 능력이 다시 임하고, 신앙은 형식이 아닌 실제 능력이 되며, 진짜 기독교인이 되고 교회는 다시 생명력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께서 약속하신 “불지어다(NIV, And surely, 명령에 순종하면 확실히) 내가 세상 끝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는 약속이 확실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 언약을 실행하는 사람은 인생의 방향이 송두리째 바뀌어 집니다. 인생이 어디에서 시작되고 어디로 향해 가고 있으며 자신이 세상에 왜 태어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모든 문제의 해답을 발견하게 되고 죄사함과 거듭남의 비밀과 복음을 깨닫게 되고, 주님과 항상 함께 매일매일 삶의 기쁨과 감격 속에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고 마지막은 영생을 얻게 됩니다.

# I. 예수님의 새 언약(지상명령)을 어떻게 실행해야 하는지 순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 1.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습니다.

마 28:19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 1) 가기 전에 성령의 권능을 받고 나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눅 24:49, 행 1:4-5, 8)

(눅 24:49) 불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행1:4-5, 8) 4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5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8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 ① 떠나기 전에 성령으로 세례받기 위해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행1:13-14) 13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매, 마태와 밋 알패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14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 ②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행 2:1-4) 1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2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3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4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 ③ 성령과 불 세례의 결과로 권능이 나타났습니다.

(행5:12-16) 12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13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14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15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16 예루살렘 부근의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 2) 권능을 받고 세상으로 나가서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칩니다(권능이 나타남).

- (마 4:23)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 (마 10:8)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 (막 16:15-18) 15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16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17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18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 (눅 4:18)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참고, 사 61:1-3)
- (행 3:1-8) 1 제 구 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2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3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4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5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6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7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8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 (행 5:12-16) 12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13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14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15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16 예루살렘 부근의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 (행 8:5-8) 5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6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7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8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 (행 10:38)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매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 (행 19:11-12) 11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12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엮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 참고, 고후 4:4(세상의신), 마 12:43-45(더러운 귀신) 고후 6:14-16(명예)

### 3)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 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막 16:15-16) 15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16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요 3:16-17) 16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  
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7 하나님이 그 아  
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 ② 예수님께서 직접 전하신 그리스도 예수

(눅 24:25-27) 25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26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  
이 아니냐 하시고 27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  
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 ③ 베드로가 전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언의 성취, 기사와 표적, 죽으심과 부활)

\*참고 행 2:14-42

#### ④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나라와 제자교육

(행 19:8-10) 8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  
론하며 권면하되 9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  
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  
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10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  
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 참고 행 20:31(삼년), 갈 1:6-12(다른복음), 롬 1장-8장(복음)

## 2. 제자들에게 세례를 베풀습니다.

(물 세례, 성령과 불세례)

(마 28:19)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  
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 1) 물 세례(침례)

(마 3:11) 11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  
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실 것이요

(행 19:3-5) 3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

레니라 4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5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 2) 성령 세례(침례)

(행 8:14-17) 14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15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받기를 기도하니 16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17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을 받는지라

(행 19:1-7) 1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2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3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4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5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6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므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7 모두 열두 사람쯤 되니라

\* 참고 롬 8:9(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고전 12:3(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음)

## 3) 불 세례(침례)

(마 3:11) 11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실 것이요

(행 2:1-4) 1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2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3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4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 3.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합니다.

(마 28:20)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지식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삶도 가르쳐야 합니다. 말씀을 따라 성령 세례 받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고,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합니다.

(딤후 3:16-17) 16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7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참고 신 31:9-13(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요 21:15(내 어린양을 먹이라)  
행 19:8-12(두 해동안 날마다 강해), 행 20:31-32(삼년 밤낮 쉬지 않고 훈계)  
롬 10:17(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렘 31:31-32(새 언약을 맺음, 마음에 기록), 생각과 마음에 기록(히 8:7-13, 히 10:14-16, 고후 3:3)

\* “불지어다(NIV And surely)” 의 의미 : 명령에 순종하면 확실히

4. 제자 교육을 받은 충성된 제자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 가르칩니다.

(딤후 2:2)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 II.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반역한 결과

호 6:7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 1. 아담에게 주신 언약

(창2:16-17) 16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17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 1) 언약 배반

(창 3:6)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 2. 이스라엘에게 주신 언약

(신 26:16-19) 16 오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니 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17 네가 오늘 여호와를 네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18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인하셨느니라 19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네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신 31:9-13) 9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10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칠년 끝 해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11 온 이스라엘이 네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12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네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13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네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 1) 솔로몬 왕의 언약 배반

\* 참고 왕상 11:1-11

### 2) 므낫세 왕의 언약 배반

(왕하 21:3-7) 3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 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4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5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6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7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 3. 여로보암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

(왕상 11:30-38) 30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열두 조각으로 찢고 31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열 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열 지파를 네게 주고 32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33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34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35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열 지파를 네게 줄 것이요 36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37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38 네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

함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 1) 여로보암 왕의 언약 배반

(왕상 12:25-33) 25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부느엘을 건축하고 26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보다 27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와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보다 하고 28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29 하나는 벧엘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30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31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32 여덟째 달 곧 그 달 열다섯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벧엘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벧엘에서 세웠더라 33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여덟째 달 열다섯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벧엘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 2) 하나님의 진노

(왕상 14:7-11) 7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8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9 네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네 등 뒤에 버렸도다 10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 자나 놓인 자나 다 끊어 버리되 거름 더미를 쓸어 버림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짱게 쓸어 버릴지라 11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 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하셨나니

### 3) 엘리야 시대에 가서는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바알이 하나님인지 알지 못했다

(왕상 18:21)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 4)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반역

(호 6:7)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 5) 새 언약(하나님의 법을 성령님께서서 마음과 생각에 기록)

(렘 31:31-33) 31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  
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32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33 그러나 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  
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히 8:7-10) 7 저 첫 언약이 무효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8 그들  
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불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  
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9 또 주께서 이르시  
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  
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  
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10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  
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  
이 되리라

(히 7:18) 전에 있던 계명은 언약하고 무익하므로 폐하고(제사법)

(히 10:9-16) 9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10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11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12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  
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13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14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15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16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고후 3:3)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  
요 오직 살아 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  
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신 30:14) 오직 그 말씀이 네게 매우 가까워서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 4. 하나님의 언약의 배반의 결과

1)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부어주시므로 글을 읽을 줄 아는 자도 깨닫지  
못함 (진리를 깨닫지 못하므로 변화가 되지 않는다)

(사 6:9-10) 9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10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열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사 29:10-12) 10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 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11 그러므로 모든 계 시가 너희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12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니라

## 2) 언약을 어긴 백성에게 내리는 심판(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사 28:12-13) 12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곧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13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롬 10:13-15) 13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14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15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 3) 입만 믿는 거짓된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능력이 없음, 인간적 방법은 형식만 남긴다)

(사 29:13)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마 15:7-9) 7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8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9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롬 10:8-10) 8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네게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9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10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 4) 거짓 선지자들의 영향과 심판

(렘 23:14-15) 14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도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느니라 15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선지자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쭉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 라 하시니라

## 5. 예수님의 새 언약(지상명령)의 배반의 결과 (마28:18-20)

마 28:18-20 18 예수께서 나아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19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20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 1) 입만 믿는 신앙인이 됩니다.(능력이 없음)

(사 29:13)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마 15:7-9) 7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8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9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딤후 3:5)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딤후 1:16)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 2) 교회가 옮겨집니다(촛대가 옮겨짐).

(계 2:1-5) 1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2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3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4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5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 참고 행 19:1-12

### 3) 미혹하는 영을 받아 거짓것을 믿게 됩니다.

(살후 2:9-12) 9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

과 10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11 이렇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12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 \* 참고 1. 아담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 : 창 2:16-17
- 1) 언약배반 : 창 3:6
2. 이스라엘에게 주신 언약 : 신 26:16-19, 신 31:9-13
- 1) 솔로몬 왕의 언약 배반 : 왕상 11:1-11
  - 2) 므낫세 왕의 언약 배반 : 왕하 21:3-7
3. 여로보암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 : 왕상 11:30-38
- 1) 여로보암 왕의 언약 배반 : 왕상 12:25-33
  - 2) 하나님의 진노 : 왕상 14:7-11
  - 3) 엘리야 시대에 가서는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바알이 하나님인지 알지 못했다.  
: 왕상18:21
4.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반역 : 호 6:7, 신 32:3-6
5. 하나님의 언약의 배반의 결과
- 1)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부어 주시므로 글을 읽을 줄 아는 자도 깨닫지 못함  
: 사 6:9-10, 사 29:10-12
  - 2) 언약을 어긴 백성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심판 : 사 28:12-13
  - 3) 입만 믿는 거짓된 신앙인 : 사 29:13, 마 15:7-9
6. 새 언약(하나님의 법을 성령님께서서 마음과 생각에 기록) : 롬 31:31-33,  
히 8:7-10, 히 7:18, 히 10:9-16, 고후 3:3
7. 예수님의 새언약(지상명령) : 마 28:18-20

## 2강 - 소명과 사명

(강사 : 김종호 목사)

### 1. 서론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본 교회 장애인대교구에서 5년간 사역하고 2005년 11월 7일 인천시 강화에 예은순복음교회를 개척해서 21년째 사역하고 있는 김종호 목사입니다. 예은순복음교회는 섬김을 통한 영혼 구원이라는 비전을 품고 있는 성도들로 구성된 공동체입니다.

예은순복음교회는 이 사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사회복지법인 예담을 설립했습니다. 현재 사회복지법인 예담은 두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중증장애인 거주 시설 예담이고, 다른 하나는 직업재활시설 예담입니다.

중증장애인 거주 시설 예담에서는 42명의 직원들이 중증장애인 50명을 섬기고 있습니다. 직업재활시설 예담에서는 6명의 직원들이 26명의 장애인들을 직업 재활을 통해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섬기고 있습니다. 직업재활시설에서는 장애인들이 빵과 쿠키와 케이크를 만들고 있으며, 바리스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은순복음교회는 고령 장애인들을 위한 요양원을 설립하고, 다문화가정을 섬길 센터를 설립할 예정입니다. 저는 오늘 개척해서 21년 동안 목회 현장에서 경험했던 일들을 선후배 동역자들과 함께 나누고, 동역자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유익한 정보를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 2. 본론

‘내가 왜 교회를 개척했는가?’, ‘하나님께서 왜 나로 하여금 교회를 개척하게 하셨는가?’ 이 두 가지 부분이 명쾌해지면 어떤 어려움에 부딪힐지라도 행복하게 목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왜 교회를 개척했는가?’, ‘하나님께서 왜 나로 하여금 교회를 개척하게 하셨는가?’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 명쾌하게 결론을 내릴 수 있다면 교회의 사이즈에 관계없이, 성도 수에 관계없이, 세상적 관점에서의 목회 성공과 관계없이 행복한 목회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왜 교회를 개척했는가?’, ‘하나님께서 왜 나로 하여금 교회를 개척하게 하셨는가?’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 명쾌하게 결론을 내리지 못한다면 교회의 사이즈에 관계없이, 성도 수에 관계없이, 세상적 관점에서의 목회 성공과 관계없이 행복한 목회를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가 왜 교회를 개척했는가?’, ‘하나님께서 왜 나로 하여금 교회를 개척

하게 하셨는가?’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 명쾌하게 결론을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명쾌한 답을 얻기 위해서는 두 가지 영역에 대한 정의가 확실히 정립되어야 합니다. 두 가지 영역은 비전과 헌신입니다.

## 1) 비전

비전은 네 가지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 ① 자신의 ‘소명’을 아는 것입니다.

성공적인 목회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확신, 하나님께서 나를 주의 종으로 부르셨다는 소명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자신이 주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소명에 대한 확신이 불분명하면 목회 현장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어려운 상황에 쉽게 낙심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 ② 자신의 ‘사명’을 아는 것입니다.

사명은 하나님께서 나를 주의 종으로 부르신 이유를 아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졸업을 1년 앞두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왜 나를 주의 종으로 부르셨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행하시고자 하는 일은 무엇일까?’ 이 문제를 놓고 집중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제가 사명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신명기를 통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14장, 16장, 24장, 26장을 통해 주신 말씀은 “가난한 형제에게 네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성중에 거주하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배부르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 중에서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는 알겠는데, 객이 누구지 도무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했지만 ‘객’이 누구지에 대한 음성은 쉽게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졸업을 앞두고 기도하던 그해에 우리나라에서 88서울올림픽이 개최되었습니다. 올림픽이 끝나면 올림픽을 개최한 나라에서 자동으로 장애인올림픽(패럴림픽)을 개최하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세계 각국의 장애인들이 입국했습니다. 그들을 보면서 ‘장애인들’이 바로 ‘객’이라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객’의 사전적 의미는 ‘남의 집에 찾아온 나그네’입니다. 당시 장애인들이 남의 집에 찾아 온 나그네처럼 사회에서 소외돼 있었습니다.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은 장애인들에 대한 인식이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시만 해도 장애인들의 인권은 정말 사각지대였습니다. 객이 누구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풀리고 나서야 비로소 부르심에 대한 사명이 확실해졌습니다.

### ③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많은 목회자가 비전이 있다고 말하면서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다. 비전은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한 수고와 땀과 노력이 수반될 때에만 비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 비전이 있다고 하면서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수고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땀 흘리지 않고, 준비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비전이 아니라 한 날 ‘몽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전에 조용기 목사님께서 “왕대밭에 왕대난다.” 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왕대밭에 왕대 납니다. 그런데 밭이 아무리 좋아도 최선을 다해 가꾸지 않으면 왕대가 날 수 없습니다. 비전은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 수고하고, 노력하고, 땀 흘리고, 애쓰며 기도할 때 비로소 비전 일 수 있습니다.

저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대학원에서 사회복지를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우리보다 복지가 앞서 있는 나라들을 다니면서 그들의 복지 마인드와 시스템을 배웠습니다. 1988년부터 2005년까지 17년 동안 제가 앞으로 감당해야 할 사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공부하고, 준비하고, 기도했습니다. 사명자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기도하고, 준비하고, 공부해야 합니다. 혹시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 준비하지 않았다면 지금부터라도 최선을 다해 준비해야 합니다.

#### ④ ‘자신의 것을 내려놓는 것’ 입니다.

개척교회가 자립하고 성장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저는 개척교회의 자립률이 7%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개척교회가 부흥하지 않는 이유는 목회자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목회자가 자신의 것을 내려놓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재정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려놓은 그 토대 위에 말할 수 없는 큰 은혜를 쌓아주십니다.

## 2) 헌신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세상을 향한 헌신으로 나눕니다. 예은순복음교회는 교회설립 후, 지금까지 교회 재정의 70% 이상을 선교와 섬김에 지출하고 있습니다.

### ① 하나님을 향한 헌신

하나님을 향한 헌신은 선교와 복음 전파입니다.

### ② 세상을 향한 헌신

세상을 향한 헌신은 섬김과 나눔입니다.

## 3. 결론

목회자가 소명에 대한 확신 가운데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최선’을 다해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목회자와 교회를 통해 일하십니다.

# 3강 - 개척교회 행정 및 사무실무

(강사 : 강덕진 장로)

## I. 개척교회규정 주요사항 요약

### 권리양도

#### ■ 절차

권리양도대상 개척교회선정(교회개척국) ⇨ 사전보고 ⇨ 실사 및 심의(개척지 교회분과위원회) ⇨ 이사장 재가 ⇨ 양도

#### ■ 시기 매년 교회개척의 날

#### ■ 요건

##### 1. 일반사항

재단법인 순복음선교회(이하 본 법인이라 함)의 목회 방침에 순응하고, 정해진 기간(5년 이상)동안 목회를 원만하게 수행하여 지원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세부사항

- ① 일반지역 : 계속 5년 이상, 주일 출석 성도 50명 이상일 경우
- ② 군, 읍, 면 단위 소도시 농어촌 지역 :  
계속 5년 이상, 주일 출석 성도 30명 이상일 경우  
단, 행정상 도심지역이라도 생활환경이 소도시 농어촌 지역과 유사한 경우 분과위원회 심의와 이사장의 재가로 소도시 농어촌지역으로 간주
- ③ 특수목회(사회복지, 공동체, NGO) 사역 :  
계속 7년 이상, 주일 출석 30명 이상일 경우  
단, 특수목회 사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와 이사장의 재가로 인정가능
- ④ 교회가 부흥되어 교회 성전을 증축 또는 이전하여 확장하는 교회는 분과위원회의 심의와 이사장의 재가로 인정가능
- ⑤ 기존 교회(양여교회 포함)를 인수 또는 승계하여 개척한 경우 :  
기존 교회의 최종 목회보고서 및 제직 성도의 동의서 인원수를 확인하고 목회시점의 새신자 등록 성도수에 대한 차감 여부를 분과위원회의 심의와 이사장의 재가에 의해 권리양도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

## 지원금제도

### ■ 절차

지원금문의(개척교회 교역자) ⇨ 지원금청원서접수(교회개척국) ⇨ 실사 및 심의(개척지교회분과위원회) ⇨ 이사장 재가 ⇨ 지원

### ■ 신청요건

- ① 천재지변 및 각종 재해로 인하여 자체 복구 능력이 없어 피해 복구지원이 필요한 개척교회
- ② 성장 가능성 있는 미자립 개척교회
- ③ 정년, 은퇴 또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교회 운영이 불가능하여 개척을 포기하는 개척교회의 교역자
- ④ 신병으로 사역을 포기하는 개척교회의 교역자

### ■ 지원규모

- ① 신청요건 ①내지②의 경우  
분과위원회 실사 및 심의와 이사장 재가를 통해 지원 규모 결정
- ② 신청요건 ③내지④의 경우  
사역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이사장 재가를 통해 결정

[지원금 산정기준]

사역기간	지급률
7년 이상 10년 미만	20%
10년 이상 15년 미만	30%
15년 이상 20년 미만	40%
20년 이상	50%

### ■ 사후관리

신청요건 ①내지②의 경우 지원금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보고

## 승 계

### ■ 절차

권리승계 가능여부 문의(개척교회 교역자) ⇨ 권리승계 신청서 접수(교회 개척국) ⇨ 실사 및 심의(개척지교회분과위원회) ⇨ 이사장 재가 ⇨ 승계

### ■ 요건

- ① 신병이나 일신상의 사유(정년 포함)로 해당 개척교회에서 목회사역을 할 수 없을 경우
- ② 정상적인 목회 사역 능력이 부족하거나 성실히 수행치 못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 승계자에 대한 처우

교회 개척자에게 개척교회 총자산가액에서 총부채액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 한도 내에서 개척지교회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단, 지원금과 위로금은 중복해서 지원하지 않는다.

[직계 승계]

가족 구성원 중에 신학교 졸업하고 현재 사역을 하고 있으며, 사명이 있는 가족이 승계받을 수 있다.

### ■ 후임자에 대한 처우

후임승계자에게는 교회개척지원금을 별도로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개척지원보조금은 개척지교회분과위원회의 심의와 이사장의 재가를 받아 지급할 수 있으나 직계 승계 시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 개척지원금 회수

### ■ 절차

지원금 회수대상 선정(교회개척국) ⇨ 실사 및 심의(개척지교회분과위원회) ⇨ 이사장 재가 ⇨ 회수

### ■ 회수대상

- ① 교회개척자가 승인 없이 목회사역을 중단한 경우
- ② 개척교회를 승인 없이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 ③ 목회정책을 위반하거나 거역하는 경우
- ④ 이단사설을 주장하거나 그 세력에 동조하는 경우
- ⑤ 본 교회 소속 교단으로부터 제명을 당한 경우
- ⑥ 교회개척자가 타 교단으로 이적한 경우
- ⑦ 교회승계를 받은 사람이 목회를 하지 못할 경우
- ⑧ 3년 연속으로 저성장교회로 판명된 경우  
저성장교회란? 교회 창립 3년 경과 후 출석성도 장년 10명 이하인 교회
- ⑨ 각종 언론매체, 사회관계망서비스(페이스북,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트위터, 기타 온라인 플랫폼) 등에 비방이나 제보를 하는 경우

### ■ 회수대상 내역

지원금 회수 대상 개척교회로 확정된 경우 지원기간과는 무관하게 지원한 개척 지원금 또는 부동산 및 시설물 일체를 회수대상으로 함

## 월 보고사항

- 보고주기 : 매월
  - 보고사항 : 당월 목회보고서(교회개척국 소정양식)  
예외) 창립교회는 교회창립 후 만 6개월이 경과한 다음 달부터
  - 보고기한 : 익월 셋째 주일까지
  - 제출처 : 교회개척국으로 제출
- ※ 목회보고서 3회 이상 미제출 시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 II. 교회 관련 세무회계

### 교회도 세무신고를 하여야 하는가?

교회도 당연히 세무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세무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세법이 규정하는 대로 장부도 기장해야 됩니다.

교회의 사업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고 사업 종류에 따라 세무신고 사항이 다릅니다.

#### ■ 고유목적사업

고유목적사업부분은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장부비치 기장의무 규정이 없으나, 설립 당시 법령 및 정관상 필요한 장부와 내부규정에 따른 장부를 비치

단, 상속 및 증여세법에 의한 출연재산에 관한 기장의무

\* 출연재산에 관한 기장의무(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1조 및 시행령 제44조)

-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별로 출연받은 재산 및 공익사업 운용내용 등에 대한 장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장부와 관계있는 중요한 증빙서류를 갖추 두어야 한다.
- 보존기간 : 소득세 과세기간, 법인세 사업연도의 종료일로부터 10년간 보존
- 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는 출연받은 재산의 보유 및 운용상태와 수익사업의 수입 및 지출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이중으로 기록하여 계산하는 부기 형식의 장부이어야 하며, 동항의 규정에 의한 중요한 증빙서류에는 수혜자에 대한 지급명세가 포함되어야 한다.

#### ■ 수익사업

수익사업 부분은 구분경리에 의한 복식기장 의무 있음

\* 구분경리란(법인세법 제113조 제1항)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 자산·부채 및 손익을 그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 교회는 법인인가? 개인단체인가?

교회는 개별적으로 사단법인, 재단법인 등기를 하지 않고,  
법인격 없이 총회의 소속된 단체로  
독립적인 운영에 관한 조직과 계산을 하며 운영됨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개인단체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구분  
등록번호의 구성 : XXX-○○-XXXXX

- 개인단체(종교단체) : 소득세법에 따라 고유번호증 중간 2자리 89로

- 법인으로 보는 단체 : 국세기본법에 따라 고유번호증 중간 2자리 82로

\* 고유번호증에 82로 표기되면

세법상 법인으로 간주되어 종교목적으로 3년 이상 사용한 부동산을 매각할 때 양  
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교회가 세무서에 고유번호증, 사업자등록증 신청 시

- 고유목적사업만 있는 경우 : 고유번호증(법인세법 or 소득세법)

- 수익사업이 있는 경우 : 사업자등록증(부가가치세법)

##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은

교회가 금융기관에 종교단체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거나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필요할 때

1. 신청방법 :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 방문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로 신청

2. 신청필요서류

-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
- 교단에서 발행한 소속증명서
- 교단에서 발행한 대표자증명서
- 교회 정관 또는 규정
- 자가건물의 경우 : 교회 소유 부동산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임차건물의 경우 : 임대차계약서

\* 고유번호증과 사업자등록증을 동시에 신청할 경우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3호)

\* 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신청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

3. 개인단체에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고유번호증 변경 시

- 종전의 고유번호증 말소 신청
-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와 해당 서류 갖추어 관할세무서에 제출  
단, 구비서류 중 정관에 고유사업과 수익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이 반드시  
기입되어야 하며 단체의 수익사업으로 얻는 수익을 분배하지 않는다는 규  
정이 기술되어야 하고, 부동산 등 재산이 독립적으로 단체의 소관이 된다  
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정관에 규정되어야 합니다.

## ※ 기부금 영수증 발급 및 보관

사업자, 근로소득자, 내국법인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은 필요경비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 기부금 영수증 발급 → 기부자별 발급명세서 작성 및 보관 →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 제출

\*가산세 신설

기부금액 불성실 및 기부자 불성실 : 발급금액×5%

기부자별 발급내역 미작성 및 미보관: 0.2%

관련회신(법인 46013-2028,1998.7.21)

【제목】 개별 종교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은 그 납입영수증 외에 그 총회 또는 중앙회 등이 주무관청에 등록된 서류를 제출해야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에 소속한 개별 종교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은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6호 규정의 기부금특별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기부금 납입영수증 외에 그 개별 종교단체가 소속한 교파의 총회 또는 중앙회 등이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 ※ 기부금 영수증의 종이발급에서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으로 변경

- 2021. 1. 1.이후 기부분부터 시범운영
- 2025년부터 전자기부금영수증의무발급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 기부금영수증 발급 합계액 3억원 이상인 기부금 단체는 의무화됨
- 기부자 혜택  
연말정산간소화 자동 반영 등 신고편의 제공  
부당공제로 인한 가산세 부담 완화
- 기부금단체 혜택  
영수증 관리비용 절감  
기부자별 발급명세서 등 작성·보관·제출의무 면제  
‘21. 7. 1. 이후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분에 대해서는 기부자별 발급명세서 등 법정서식 작성·보관·제출 의무가 면제됩니다.

##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신청은?

교회가 부동산을 취득하여 등기하고자 할 때

1. 신청방법 : 방문, 인터넷, 팩스, 우편
  2. 신청장소 : 시, 군, 구청 지적과 또는 토지정보과
  3. 신청서류
    -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신청서
    - 정관 또는 규약
    - 회의록(또는 결의서)
      - 회의록에는 명칭, 주사무소, 회의 일시, 회의장소, 참석인원, 회의안건 등을 기재
      - 회의안건에는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신청에 대한 건, 대표 선출에 대한 건, 주사무소 선정에 대한 건 등이 필히 기재되어야 함
      - 회의록 끝부분에 명칭(직인 날인, 없는 경우 생략 가능), 대표자 성명(인감날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기재 필수
      - 회의참석자 또는 임원명단 작성 첨부(대표자 포함 7인 이상)-원본제출 필수 명부에는 성명, 주소, 연락처 기재 후 서명 및 날인
    - 교단에서 발행한 소속증명서
    - 교단에서 발행한 대표자증명서
    - 교단에서 발행한 직인증명서
    - 직인 및 신분증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장
- \* 1995. 7. 1. 시행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명의 신탁한 등기는 유예기간 1년 이내에 실명등기를 하지만 종교단체, 향교 등이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부동산 등기법 제41조의 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법인 아닌 사단, 재단으로서 종단, 교단, 유지재단, 기타 유사 연합단체에 등기되는 것은 예외로 한다. 단, 이 법 시행 이후 종교단체도 예외규정 이외에는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여야 함. 당회장, 장로, 집사 등의 명의를 안됨
4.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변경신청
    - 신청원인 : 명칭, 사무소의 주소, 대표자(주소, 주민번호)가 변경된 경우
    - 신청시기 : 신청이유가 정리 완료된 후 등록번호 파일변경신청서 제출
    - 신청서류 :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 변경 사항을 사전에 등기하지 않고 임의로 변경된 명칭 및 대표자로 등록 사용하는 경우 추후 변경등기가 불가하거나 어려우므로 유의하여야 함

## 교회도 소득신고를 하여야 하는가?

교회도 종교인소득과 근로소득을 구분하여 당연히 신고하여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종교인소득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지만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경우 해당소득을 근로소득  
으로 봄

### 1-1. 과세체계 비교1

	종교인소득(기타소득) (종교인소득의 과세체계 적용)	근로소득 (근로소득의 과세체계 적용)																						
과세소득	종교인이 종교활동과 관련하여 소속된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																							
비과세소득	학자금, 식사·식사대, 실비변상액 (종교활동비 포함), 출산보육수당, 사택제공 이익 등	근로소득의 비과세소득 규정을 적용(사실상 동일)																						
필요경비 또는 근로소득 공제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30%;">종교인이 받은금액</th> <th style="width: 70%;">필요경비</th> </tr> </thead> <tbody> <tr> <td>2천만원 이하</td> <td>80%</td> </tr> <tr> <td>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td> <td>1,600만원 + 2천만원 초과액의 50%</td> </tr> <tr> <td>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td> <td>2,600만원 + 4천만원 초과액의 30%</td> </tr> <tr> <td>6천만원 초과</td> <td>3,200만원 + 6천만원 초과액의 20%</td> </tr> </tbody> </table> <p>예) 수입금액 5천만원인 경우 2,900만원 필요경비 인정 필요경비초과 시 지출증빙이 있는 필요경비 산입가능</p>	종교인이 받은금액	필요경비	2천만원 이하	80%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1,600만원 + 2천만원 초과액의 50%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2,600만원 + 4천만원 초과액의 30%	6천만원 초과	3,200만원 + 6천만원 초과액의 20%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30%;">총급여액</th> <th style="width: 70%;">근로소득공제금액</th> </tr> </thead> <tbody> <tr> <td>500만원 이하</td> <td>총급여액의 70%</td> </tr> <tr> <td>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td> <td>350만원 + 500만원 초과액의 40%</td> </tr> <tr> <td>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td> <td>750만원 + 1,500만원 초과액의 15%</td> </tr> <tr> <td>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td> <td>1,200만원 + 4,500만원 초과액의 5%</td> </tr> <tr> <td>1억원 초과</td> <td>1,475만원 + 1억원 초과액의 2%</td> </tr> </tbody> </table> <p>예) 총급여액 5천만원인 경우 1,225만원 소득공제</p>	총급여액	근로소득공제금액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의 70%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350만원 + 500만원 초과액의 40%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750만원 + 1,500만원 초과액의 15%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200만원 + 4,500만원 초과액의 5%	1억원 초과	1,475만원 + 1억원 초과액의 2%
종교인이 받은금액	필요경비																							
2천만원 이하	80%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1,600만원 + 2천만원 초과액의 50%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2,600만원 + 4천만원 초과액의 30%																							
6천만원 초과	3,200만원 + 6천만원 초과액의 20%																							
총급여액	근로소득공제금액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의 70%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350만원 + 500만원 초과액의 40%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750만원 + 1,500만원 초과액의 15%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200만원 + 4,500만원 초과액의 5%																							
1억원 초과	1,475만원 + 1억원 초과액의 2%																							
소득공제	기본공제, 추가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개인연금저축	(좌동) + 특별소득공제(건보료 등), 주택마련저축공제, 신용카드 공제,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기부금공제, 외국납부, 연금계좌세액공제, 표준공제(7만원)	(좌동, 표준공제는 13만원)+월세, 의료비·교육비·보험료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근로, 자녀장려금	수급가능																							

1-2. 과세체계 비교2

과세체계		종교인소득	근로소득		
① 총수입금액(비과세소득 제외)		총수입금액	총급여액		
② 필요경비		필요경비 (20~80%)	근로소득공제 (2~70%)		
③ 소득금액(① -②)					
④ 소득 공제	인적	기본(본인·배우자·부양가족 인당 150만원)	○	○	
		추가(경로 100만원, 장애인 200만원등)	○	○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보험료(전액)		○	○	
	특별	건강· 고용보험료(전액)	×	○	
		주택자금(300~1,800만원 한도)	×	○	
	조특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	×	○	
		장기펀드 저축액	×	○	
		창업투자조합 출자금 등	○	○	
		개인연금저축	○	○	
		소득공제등 종합한도초과액	○	○	
⑤ 과세표준(③-④)					
⑥ X 세율(6~42%)					
⑦ 산출세액(⑤X⑥)					
⑧ 세액 공제	근로소득(50만원~74만원 한도)		×	○	
	외국납부(국외원천소득비율 한도)		○	○	
	자녀(1명 15만원, 2명 30만원, 3명 60만원),출산입양		○	○	
	연금계좌[12~15%, 400만원(퇴직연금 700 한도)]		○	○	
	특별	보험료(12%, 100만원 한도)		×	○
		의료비(15%, 700만원 한도)		×	○
		교육비[15%, 300만원(대학 900)한도]		×	○
		기부금(금액별 100/110,15%,25%,30%)		○	○
	표준세액공제(근로소득은 특별소득세액공제미신청자)		○ (7만원)	○ (13만원)	
	조특별	전자신고(2만원)		○	○
정치자금기부금 등		○	○		
⑨ 결정세액(⑦-⑧)					
⑩ 기납부세액					
⑪ 차가감 납부(환급)할 세액(⑨-⑩)					

## ※ 비과세 소득에 대해

- 학자금

종교인 활동 관련 교육·훈련을 위하여 받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외국 유사교육기관 포함),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외국 유사교육기관 포함),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의 입학금·수업료·수강료, 그 밖의 공납금

Tip 자녀학자금

자녀학자금은 종교인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종교인 본인의 학자금과 달리 비과세 대상이 아니며, 근로소득으로 신고 시에는 교육비 세액 공제가 가능

- 식사 또는 식사대 : 식사를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 월 20만원 이내의 식사대

- 실비변상적 성질의 지급액

① 일직료·숙직료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격의 급여

② 여비로서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③ 종교활동비

종교인이 소속 종교단체의 규약 또는 소속 종교단체의 의결기구의 의결·승인 등을 통하여 결정된 지급 기준에 따라 종교활동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은 금품 및 물품

- 종교인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도 종교활동비는 비과세소득으로 구분

- 비과세 요건(모두 충족되어야 함)

· 소속 종교단체의 규약 또는 의결기구의 의결·승인 등이 있어야 하고,

· 승인에 따라 결정된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되어야 하며,

· 종교활동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아야 함

④ 종교인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받는 지급액

- 출산 및 보육관련 비용

종교인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금액으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 사택제공이익

종교인이 사택을 제공받아 얻는 이익을 말함

이 경우 사택은 종교단체가 소유한 것으로서 종교인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주택이나, 종교단체가 직접 임차한 것으로서 종교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을 말함

## 2. 종교인소득 관련 신고사항

### 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 매월 납부 원칙
- 반기별 납부
  - 신청기간

소득지급시기	신청기간	신고서 제출 및 납부
1월~6월	전년도 12.1~12.31	당해년도 7월 10일
7월~12월	당해년도 6.1~6.30	익년도 1월 10일

- 신청방법 : 인터넷, 우편, 방문 신청

- \* 종교단체는 소속된 종교인에게 지급하는 종교인소득에 대하여 매월(또는 반기별\*) 원천징수 및 다음 해 2월 소득지급 시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며,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 다음 해 5월에 종교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함

\* 상시고용인원 규모와 관계없이 종교단체는 반기별 납부 신청 가능

### ② 지급명세서 제출

다음 해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

비과세소득인 종교활동비 지급액(종교활동에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종교인에게 지급된 금액)도 지급명세서에 기재하여 제출

- \* 불성실 가산세 :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하거나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지급금액의 1%를 결정세액에 가산하여 징수  
단 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0.5%

## 3. 4대 사회보험 적용여부

구분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종교단체 (종교인)	여	여	부	부

건강보험 : 종교단체가 보험료의 50%를 부담하는 직장가입자 적용이 가능  
1인인 경우 지역자가입자 적용

국민연금 : 사업장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사업장가입 적용이 가능

## 근로 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가?

종교인 소득에 대한 신고방식에 관계없이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음(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 및 제100조의 28)

\* 종교인 소득에 대한 장려금은 2019년(2018년 귀속분)부터 신청 가능

### 1. 근로장려금

소득이 적은 근로자·자영업자 가구 등에 대해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장려금을 지급하여 소득을 지원하고 근로를 유인하는 제도  
최대지급액 165만원~330만원

### 2. 자녀장려금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7,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100만원(최소 5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최대지급액 자녀 1인당 100만원(최소 50만원), 단독가구는 지원없음

### 3. 신청자격

소득, 재산 등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 소득요건

- ①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을 것
- ②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근로, 사업, 기타, 이자, 배당, 연금, 종교인 소득의 합계)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단독가구<sup>1)</sup> 2,200만원, 홑벌이가구<sup>2)</sup> 3,200만원, 맞벌이가구<sup>3)</sup> 4,400만원  
<sup>1)</sup>홑벌이·맞벌이 가구에 해당하지 아니한 가구  
<sup>2)</sup>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나 부양자녀(18세미만)가 있거나,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70세 이상의 부 또는 모(각각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가 있는 가구  
<sup>3)</sup>맞벌이 가구 : 배우자가 사업소득(총수입금액×업종별조정률), 근로소득(총급여액),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 재산요건

- ① 2025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sup>1)</sup>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원<sup>2)</sup> 미만
- ②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sup>3)</sup>,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sup>1)</sup>1세대(가구)의 범위-2025.12.31.현재 거주자와 다음의 ①,②,③에 해당하는 자가 구성하는 세대  
① 배우자 ②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③부양자녀

2)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며, 재산 합계액이 1.7억원 이상이면서 2.4억원 미만의 경우에는 산정액의 50%만 지급

3)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의 비교없이 간주전세금(주택가액의 100%)으로만 평가

#### 4.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구분		대상자	산정대상	신청시기
선택	정기신청	근로, 사업, 종교인소득자	25년연간소득	'26.5.1.~6.1.
	반기신청	근로소득자	26년 상반기소득	'26.9.1.~9.15.
			26년 하반기소득	'27.3.1.~3.15.

- 신청방법 : ARS전화, 홈텍스, 인터넷, 신청대리 및 자동신청제도

#### 5. 심사 및 지급

- 심사

- 지급기한

- (정기신청분) 9월 말까지 지급
- (기한 후 신청분)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 허위신청자에 신청자에 대한 불이익 : 지급한 장려금을 환수하고 지급 제한

- 환수액 : 지급액 + 가산세(1일 22/100,000)

- 지급제한 : 고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 2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인 경우 5년

- 장려금 감액 및 체납충당

반기신청 관련 유의사항	적용
재산합계액이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인 경우	해당 장려금의 50% 지급
기한 후 신청한 경우	해당 장려금의 95% 지급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자녀세액공제금액 차감
체납액이 있는 경우	환급금액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
이미 지급한 장려금이 환수되는 경우	가산세 부과(1일 22/100,000)

## 교회의 수입·지출 기록관리는?

### 1. 종교인 소득과의 관계

구분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종교단체의 구분기록·관리		비고
		수입	비용	
고유 목적 사업	과세 대상 아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부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부자에게 기부금 영수증 발행</li> <li>-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세무서 제출</li> </ul> </li> <li>•기타수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종교활동비용</li> <li>•종교시설 유지비용</li> <li>•종교시설 증축비용</li> <li>•종교시설 관련 공과금 및 재산세 등</li> </ul>	과세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종교인에게 귀속되는 지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활비, 상여금, 격려금 등</li> <li>- 매월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사례비 등</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종교인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타소득 또는 근로소득으로 신고</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직원보수</li> </ul>	근로소득
수익 사업	과세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매출액</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매출(서비스)원가</li> <li>•인건비</li> <li>•부대비용</li> </ul>	종교단체에 대해 과세

### 2. 수입·지출 구분 기록·관리

- 구분기장이란 교회가 소속 종교인에게 지급한 금품 등과 그 밖에 종교활동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구분하여 기록·관리하는 것
- 교회가 법에 따라 정당하게 구분 기장한 경우, 종교인소득 관련 세무 조사 시 교회가 소속 종교인에게 지급한 금품 외의 종교활동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구분하여 기록·관리한 장부·서류는 조사대상이 아님
- 교회의 수입 구분  
 교회의 수입은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으로 구분되며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교회에서 관련 세금을 신고하여야 함
  - 고유목적사업만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 대상이 아님
  - 수익사업이 있는 교회는 개인인 경우 소득세, 법인인 경우 법인세가 과세됨
- 교회의 지출 구분  
 교회가 고유목적 사업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은 과세대상(원천징수)에 해당하지 않으나, 종교인 또는 종교인이 아닌 종사직원에게 귀속되는 소득은 소득세 과세대상(원천징수)에 해당
  - 종교인에게 귀속되는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종교인소득으로 구분
  - 종교인이 아닌 종사직원에게 귀속되는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소득 성격에 따라 근로소득 등으로 구분
  - 교회가 고유활동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으로 종교인이나 종사직원에게 귀속되지 않는 경우 과세대상(원천징수)이 아님

### 3. 지출에 대한 세부내용

- 교회는 종교활동을 수행하면서 소요되는 비용(지출금액)을 아래와 같이 각

각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함

- 종교인에게 지급하는 것(종교인소득)

종교인에게 귀속되는 것 - 종교인의 종교소득으로

종교인에게 종교활동을 위해 지출한 비용 - 법령에 적합한 경우 비과세

- 종교인이 아닌 직원에게 지급하는 소득 - 종사직원의 근로소득으로

- 위에 귀속되지 않는 비용 등(유지비용 등) - 과세 대상 아님

- 교회가 종교활동을 수행하면서 소요되는 비용을 소득 귀속자별로 구분하여 기록하지 않거나, 내부통제시스템에 의해 그 지급내역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을 정확히 계산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종교활동 비용에 대해 귀속자별로 아래와 같이 명확히 구분하여 기록

- 종교활동 비용 중 종교인소득, 종사직원 근로소득, 특정인에게 소득이 귀속되지 않고 행사비용 등과 같이 종교의 고유활동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 등을 구분하여 기록

- 내부규정에 따른 회계처리 시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종교인에게 귀속되는 소득과 종사직원에게 귀속되는 소득을 별도 계정에 의해 관리

- 종교인 회계를 구분하여 종교인에게 지급하는 금액 중 종교인에게 귀속되는 금액과 귀속되지 않은 금액을 구분하여 원천징수대상 종교인소득을 관리

- 종교인소득 계정으로 관리하는 방법

- 종교인소득 계정은 종교인에게 귀속되는 소득만을 구분하여 별도 계정으로 기록하고, 종교인이 교회를 위해 지출한 비용은 교회의 회계처리규정에 의해 사용범위가 확정되어야 함

교회가 종교활동을 위해 지출한 비용이 내부통제시스템에 의해 사용여부, 지출처, 사용금액 등이 확인되는 경우 종교인소득 계정에 포함되지 않도록 함

- 종교인소득 계정은 종교인별로 세부 지급명세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록

- 종교인소득 계정으로 관리하는 경우 회계처리 규칙 등에 의해 작성된 장부를 토대로 종교인에게 지급되는 금액을 종교인소득계정으로 처리

- 교회는 종교인소득 계정에 대하여 과세·비과세로 분류하고 과세대상 소득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원천징수

- 종교인 회계를 별도 기록하는 방법

- 교회의 고유목적사업의 수입과 지출을 전반적으로 기록하는 것으로 지출에는 종교인에게 귀속되는 지출을 포함하여 기록

- 종교인 회계는 교회의 지출 중 종교인을 통해 지출된 금액에 대해서만 기록하는 것으로 종교인에게 귀속되는 소득과 교회를 위해 지출한 비용을 구분하여 기록하여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파악하는 데 편리

• 종교활동 비용에 대한 관리 방법

- 종교인에게 귀속되지 않은 종교활동 비용은 사용 시 사용내역을 기재하여 사용목적에 맞게 지출되었는지 검증이 가능하도록 내부통제시스템이 설계되어야 함
- 회계처리 규칙 등에 의해 작성된 장부를 토대로 종교인에게 지급되는 금액을 종교인회계로 구분하여 처리
- 종교단체는 종교인회계에서 지출한 금액에 대하여 과세·비과세·과세 제외로 분류하고 과세대상소득에 소득세를 원천징수

Q 종교인소득 과세와 관련하여 종교단체도 별도로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나요?

A 종교인소득 과세는 종교인이 소속된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제도로 종교단체가 별도로 부담하는 세금은 없습니다.

다만, 종교인소득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하는 경우에 종교단체는 원천징수한 세금을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종교인소득 과세와 별개로 종교단체가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Tip

종교활동비용 관리사례

- ① 종교활동비용은 종교단체의 고유활동에서 발생하는 제반 비용으로, 종교인 개인에게 귀속되는 소득과는 구분됩니다.
- ② 종교활동 비용은 종교인의 종교활동을 지원하는 데 사용되며, 내부 결정기관에서 승인받은 예산을 한도로 합니다.
- ③ 지출은 종교단체 명의의 카드(또는 체크카드)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④ 종교활동 비용을 지출한 종교인은 매월 카드사에서 발행하는 사용 내역서에 사용 용도를 기재하여 종교단체에 제출합니다.
- ⑤ 종교단체 명의의 카드를 개인용으로 사용해서는 안되며, 불가피하게 개인용으로 지출한 경우 해당 금액을 종교단체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 ⑥ 종교인이 개인카드를 이용하여 종교활동 비용을 사용한 경우, 카드 전표에 사용목적과 내역을 기재한 청구서를 작성하여 종교단체에 제출합니다.
- ⑦ 영수증을 수령할 수 없는 지출의 경우 영수증을 받을 수 없는 사유와 지출 일시 및 내역을 기재한 내부영수증을 작성한 후 종교단체에 제출하고 종교단체는 내부통제시스템에 의해 적정 여부를 확인한 후 지급여부를 결정합니다.

## 부동산 취득시 교회가 부담할 세금은?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내지 제6항  
종교단체가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추징하는 경우]

1.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직접 사용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지방세, 지역자원시설세, 등록면허세,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분 면제

- 부설주차장의 경우 직선거리 300m, 도보거리 600m이내인 경우 비과세
- 부목사 사택 : 고유목적부동산으로 인정하지 않고 과세

## 소득이 발생할 때 납부할 세금은?

- 교회에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 고정자산(토지, 건물)을 처분할 때
  - 은행이자 발생할 때
  - 부동산 임대 수입이 발생할 때
  - 간이식음료, 카페 등 기타 수익사업으로 수입이 발생할 때
- 신고하는 세목 및 신고기간
  - 법인(82) : 법인세 - 매사업년도 소득을 합산하여 다음 해 3. 31까지
  - 개인(89) : 종합소득세 - 매사업년도 소득을 합산하여 다음 해 5. 31까지
  - 양도소득세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내 또는 다음 해 5. 31
- 교회의 고유목적준비금 설정 한도
  - 이자수입등 × 100%
  - 기타수익(고정자산처분) × 50%
  - \* 고유목적준비금 : 교회가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기 위하여 필요 경비를 설정하는 손금(비용)으로 산업 단) 설정 후 5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함.
  - \* 고유목적준비금을 설정가능 법인 :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그 소속단체 포함)
- 교회의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특례
  - 원칙- 신고과세
  - 특례- 원천분리과세 - 분리과세로 종결
- 고정자산처분(양도 시 소득)에 따른 신고 특례
  - 양도소득세- 소득세법에 의한 신고
  - 법인세- 법인세법에 의한 신고
  - 단) 양도소득세 신고 시 누진세율 적용대상이 되는 예정신고를 2회 이상한 경우와 기타수익사업에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에 의한 법인세과세표준신고를 해야 함.
- ※ 주의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세액 공제 10% 2010년부터 폐지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에 따른 무신고 가산세 20% 신설

※ 이자소득만 있는 교회의 원천징수세액 환급방법

- 교회의 이자소득은 다른 소득이 없을 경우 은행에서 원천징수된 것으로 법인세 신고의무가 종결.

다만 5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비에 충당하기로 “고유목적준비금”을 설정하고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 제2항 각호에서 규정한 간이신고서식에 의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여 기납부한(은행에서 원천징수한) 이자 소득세를 전액 환급 받을 수 있다.

- 이자소득만 있는 공익법인의 법인세 신고서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법칙 별지 56호 서식)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조정명세서(법칙 별지 27호 서식)  
원천납부세액 명세서(법칙 별지 제10호 서식(갑)(을))  
법인설립허가서, 소속증명원

◎ 관련예규

【분류/일자】 국심2002광580, 2002.5.22

【제목】 비영리법인이 이자소득에 대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해 법인세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원천징수 방법으로 종결되므로 환급대상 아님

## 교회가 부동산을 출연(증여)받는 경우

- 교회가 출연받은 재산을 아래와 같이 사용할 때 비과세
  - 3년 이내에 공익목적사업 직접 사용한 때
  - 출연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용으로 운용하여 운용 소득을 공익목적에 70% 이상 사용한 때
  - 출연재산을 매각하고 매각대금을 90%이상 공익목적 사업에 3년 이내에 사용한 때
- ※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현금(부동산, 주식은 제외)은 예외
- 증여재산의 증여일 : 증여재산 유형별로 취득시기 다름
  -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 : 소유권의 이전 등기·등록 신청서 접수일
  - 증여 목적으로 수증인 명의로 완성한 건물이나 취득한 분양권 :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실상 사용일·임시사용 승인일 중 빠른 날
  -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 가치가 증가한 경우 : 재산가치 증가 사유 발생일
  - 주식 및 출자지분 : 객관적으로 확인된 주식 등 인도일  
다만, 인도일이 불분명하거나 인도 전 명의개서 시 명부등의 명의개서일
  - 무기명채권 : 이자지급 등으로 취득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날  
다만, 불분명 시 이자지급·채권상환을 청구한 날
  - 위 외의 재산: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 증여세 신고기한 :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이내(증여의제제외)
- 증여세 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원이하	10%	-
1억원초과 5억원이하	20%	1,000만원
5억원초과 10억원이하	30%	6000만원
10억원초과 30억원이하	40%	1억6천만원
30억원초과	50%	4억6천만원

※ 신고세액공제 3%

신고기한까지 신고하고 적법하게 신고된 산출세액에서 공제세액 등 차감한 금액에 공제율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

## 교회가 지급하는 강사료, 원고료 등에 대한 신고 납부방법은?

- 기타소득 :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이외의 소득으로서
  - ① 상금, 현상금, 포상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 ② 복권, 경품권, 기타 추첨권에 의하여 받은 당첨금품
  - ③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
  - ④ 유실물 습득 또는 매장물 발견으로 인하여 보상금
  - ⑤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받는 강연료
  - ⑥ 뇌물, 알선수재, 배임수재 등 세법상 25개 항목에 규정됨
- 과세표준 :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받는 강연료  
 $\text{강연료} \times \text{필요경비}(80\%) = \text{과세표준}(20\%)$ 
  - 세율 : 과세표준  $\times$  20%
  - ※ 연간 과세표준이 300만원 이하이면 원천징수된 세액으로 납세가 종결되나, 연간 과세표준이 300만원 초과되면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됨.
  - 세액의 원천징수 : 과세표준에 20%를 강연료를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